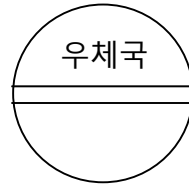
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납 세
고 지 서



바코드
18mm
음성변환용(외부)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자동차세(자동차소유)

받는 사람

바코드
17mm

우편반송용

납 부 장 소	
은 행 방 문 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	
가 상 계 작	
온 라 인	

※상세안내 후면 참조

바코드 18mm 음성변환용(내부)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시·군 자동차세 (수납은행 확인용)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
번호

납기 내:	까지
세 목	납부할 세액
자동차세	
지방교육세	
합 계	

납기 후: 까지

납기 후 금액

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

시·군 자동차세(소유분)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	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기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------	------	---	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

납 세 자 납세자번호:

주 소 과세대상:

세 목	납부할 세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
자동차세		
지방교육세		
합 계		

납기 내	까지
납기 후	까지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 * 이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,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담당자: 문의처: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전자납부 번호

과세표준과 세율					자동차세 부과 안내											
승용자동차	영업용		비영업용			과세근거	「지방세법」 제124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49조부터 제154조까지									
	1,600cc 이하	cc당 18원	1,000cc 이하	cc당 80원												
	2,500cc 이하	cc당 19원	1,600cc 이하	cc당 140원		납세의무자	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·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									
	2,500cc 초과	cc당 24원	1,600cc 초과	cc당 200원												
	※ 비영업용: 3년차부터 연 5%씩, 최대 50%까지 세액경감															
그 밖의 승용자동차	영업용		비영업용			징수방법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과세기간</th><th>납 기</th></tr><tr><td>제1기분</td><td>1~6월</td><td>6.16~30.</td></tr><tr><td>제2기분</td><td>7~12월</td><td>12.16~31.</td></tr></table>	구 분	과세기간	납 기	제1기분	1~6월	6.16~30.	제2기분	7~12월	12.16~31.
	구 분	과세기간	납 기													
제1기분	1~6월	6.16~30.														
제2기분	7~12월	12.16~31.														
		20,000원		100,000원			가산금	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(지방세액의 3%)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) 증가산금(지방세액의 0.75%)이 추가								
승합자동차	구 분	영업용		비영업용												
	고속버스	100,000원		-												
	대형전세버스	70,000원		-												
	소형전세버스	50,000원		-												
	대형일반버스	42,000원		115,000원												
	소형일반버스	25,000원		65,000원												
화물자동차	구 분	영업용		비영업용		구제신청 기한 안내	<table><tr><td>이의신청</td><td>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</td></tr><tr><td>심판청구</td><td>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</td></tr></table>	이의신청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	심판청구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					
	이의신청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														
	심판청구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														
	1,000kg이하	6,600원		28,500원												
	2,000kg이하	9,600원		34,500원												
	3,000kg이하	13,500원		48,000원												
	4,000kg이하	18,000원		63,000원												
	5,000kg이하	22,500원		79,500원												
8,000kg이하	36,000원		130,500원													
1만kg이하	45,000원		157,500원													
특수자동차	구 분	영업용		비영업용		이의신청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									
	대형특수자동차	36,000원		157,500원												
	소형특수자동차	13,500원		58,500원												
3륜 이하 소형자동차	구 분	영업용		비영업용		심판청구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									
	대형특수자동차	36,000원		157,500원												
	소형특수자동차	13,500원		58,500원												
구분		과세표준		세율												
지방교육세		자동차세 납부할 세액		30%											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